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3가단53182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

피고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

담당변호사 장영준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대한

변론 종결2024. 9. 25.

판결 선고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10. 1. 체결된, 주채무자 D 주식회사에 관한 연대보증계약, 주식회사 E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인쇄판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, C은 'F'라는 상호로 인쇄 및 광고물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.

나. 원고는 2012. 11. 30.부터 2021. 7. 30.까지 C에게 6,771,765,913원 상당의 인쇄판을 납품하였으나, C은 그 물품대금으로 6,370,842,434원만 지급하였다. 이에 원고는 2021. 8. 9.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269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. 7. 8. 위 법원으로부터 'C은 원고에게 400,923,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. 이에 C이 항소(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340)하였으나 2023. 9. 21.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23. 10. 6.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다. C은 2020. 10. 1. 피고와 사이에 ① D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 538,256,324원 및 향후 발생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 일체, ② 주식회사 E(이하 D 주식회사와 통칭하여 '이 사건 주채무자들'이라 한다)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 438,801,966원 및 향후 발생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 일체를 각 연대보증하는 계약(이하 통칭하여 '이 사건 연대보증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라.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상태였다.

마. 한편, C은 2020. 12. 9.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중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달 10.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바.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(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32876,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3605, 이하 '관련소송'이라 한다), 위 제1,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

판결이 선고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 내지 5, 12호증, 을제 1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제척기간 도과 주장

(1)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련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및 위 계약 체결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서증이 2022. 2. 7. 원고에게 송달되었다. 따라서 원고는 위 2022. 2. 7.경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, 그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23. 8. 23.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.

(2)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,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(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등 참조)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

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).

(3)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, 을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, 즉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, ②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었던 것으로 보이고, 그 부동산들은 상가건물 내지 임야로 법원의 감정을 통하지 않고는 쉽게 그 정확한 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운바, 관련소송에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는 2022. 8. 24.경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C의 소극재산 중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또한 관련소송에서의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서 비로소 그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있었던 점, ④ 무엇보다도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2022. 10. 19.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연대보증체결일부터 약 2개월 후의 C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외에도 기계시설대 외 비품 618,775,686원 상당, 회수가 보장된 매출채권

161,246,000원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C이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적극 다투었던 점, ⑤ 관련소송에서 무자력 판단은 2020. 12. 9.을 기준으로 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은 2020. 10. 1.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, C은 2020. 10. 29.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중구 G건물 I호를 매각한바, 원고는 C이 위 2020. 12. 9. 당시 무자력이었음을 확신한 이후에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사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원고는 아무리 빨라도 그 주장과 같이 관련소송에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가 법원에 제출된 2022. 8. 24.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중복제소 주장

피고는 관련소송이 소송계속 중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관련소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로서 이 사건과 소송물을 달리하여 동일한 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. 소송상 권능의 남용

피고는 원고가 관련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관련소송과 근접하여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소송상 권능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송상 권능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일인 2020. 10. 1.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(1)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(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),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

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,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).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였고, 위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됨으로써 C의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C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자신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,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(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은 이 사건 주채무자들이 피고로부터 종이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, 이는 결국 C의 사업 갱생을 위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위 인정사실,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C과 이 사건 주채무자들은 엄연히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, C과 위 회사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채무자들의 사업 운영과 C의 갱생이 관련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, ②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C의 사업 계속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더라도, 위 계약을 통하여 C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, ③ 관련소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, 그 주요 논거로 C이 이 사건 주채무자들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었던 이상 위 주채무자들의 희생이 C이 연대보증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, 위 논거는 연대보증계약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C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우관제